자 금 운 용 업 무 에 관 한 세 칙

자금운용업무에관한세칙

목 치

제1장 총칙
제1조 목적1
제2조 적용범위
제3조 정의
제4조 자금운용담당자
제2장 기본원칙2
제5조 자금운용의 기본원칙
제6조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보고2
제7조 자체운용
제8조 거래금융기관
제9조 거래금융기관의 선정원칙2
제10조 운용상품의 선정3
제11조 채권의 매입3
제12조 수익증권의 매입3
제13조 간접투자
제14조 자문서비스
제15조 자금차입
제3장 자금위험관리위원회3
제16조 설치 및 구성
제17조 위원자격
제18조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······
제19조 임기

자금우용업무에관한세칙

제4장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-6

제5장 감사 및 공시-7

최-7

자금운용업무에관한세칙

2008. 11. 28 제정 (규정제849호) 2009. 8.26 직제시행세칙 개정 (규정제872호) 2011. 6. 14 개정 (규정제928호) 2017.12. 4 제규정관리규정 개정(규정제1160호) 2019.12.18. 개정(규정제1252호) 2024.12.11. 개정(규정제1485호)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세칙은 한국교통안전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의 자금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7.12.4>
- 제2조(적용범위) 자금의 운용에 관하여 관계법령, 정관 및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제3조(용어의 정의) ①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"운용자금"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3조에 따른 공단이 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. <개정 2017.12.4>
- 2. "현금성자금"이란 함은 운용기간이 3개월 이하거나 수시인출이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자금 및 현금을 말한다.
- 3. "유동성자금"이란 운용기간이 3개월 초과 1년 이하인 자금을 말한다.
- 4. "장기성자금"이란 운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금을 말한다.
- 5. "자금운용담당자"란 자금운용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6. "재무위험"이란 정책변경, 사업부진, 차입금증가, 금리 및 환율변동 등의 사유로 공단의 재무구조가 현저히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.
-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한 정의는 관련법령, 관련 제규정 및 시장 관행의 순서에 따른다.
- **제4조(자금운용담당자)** ① 자금운용담당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- ② 자금운용담당자는 항상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.
- ③ 자금운용담당자는 관련 법령, 자금운용관련 제반규정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④ 자금운용담당자는 본인의 지위나 업무상 획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금운용에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

제2장 기본원칙

- 제5조(자금운용의 기본원칙) 자금운용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 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안정성과 수익성이 종합적으로 제고되도록 공정하게 운용되어야 한다.
- 제6조(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보고) ① 자금운용담당자는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연간자금운용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18.>
- ② 연간 자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- 1. 자금수급계획
- 2. 자금운용전략 및 배분계획
- 3. 자금운용실적
- 4. 목표수익률 및 허용위험한도
- 5. 기타 필요한 사항 등
- ③ 금융시장의 환경변화 및 자금수급의 급변으로 인하여 연간자금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- **제7조(자체운용)** ① 자금운용은 자체운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자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위탁운용할 수 있다.
- ② 위탁운용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, 이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8조(거래금융기관) 자금을 거래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「은행법」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(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,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을 포함하다.)
- 2.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농협은행 및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수협은행
- 3.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- 4.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- 5.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에 따른 금융투자업자, 종합금융회사, 증권금융회사
- 6.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관한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- 7. 「보험업법」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
- 8.「상법」상의 주식회사 또는「대통령령」이 정하는 금융기관으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회사 <개정 2024.12.11.>
- **제9조(거래금융기관의 선정원칙)** ① 거래금융기관은 거래의 수익성, 안정성, 거래상품의 특수성 및 공단기여도 등을 고려해 필요시마다 자금운용담당부서장이 선정한다.

- ② 거래금융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기관에 대하여 거래를 제하학 수 있다
- 1.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공단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
- 2. 법령, 규정 또는 계약 등을 위반하여 거래에 신뢰성 및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
- 3. 운용자금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관리를 소홀히 하여 자금의 안정성을 해치는 경우
- 제10조(운용상품의 선정) 공단이 운용상품을 선정할 때에는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, 유동성 및 수익성은 안정성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.
- 제11조(채권의 매입) 공단이 매입할 수 있는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국채, 지방채
- 2. 국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
- 3. 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채권
- 4. 금융기관이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회사채
- 제12조(수익중권의 매입) 공단이 매입할 수 있는 수익증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가 판매하는 채권형 수익증권
- 2. 가접투자자산우용업법에 의한 자산우용회사가 발행하는 채권형 수익증권
- 3.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가 판매하는 채권형 수익증권
- 제13조(간접투자) 자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거래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.
- 제14조(자문서비스) 자금운용의 자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, 성과평가 등 자금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,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로부터 유료 자문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.
- 제15조(자금차입) ① 공단은 사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 의2의 규정에 따라 소요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. <개정 2017.12.4., 2024.12.11.>
- ②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2에 따른 차입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고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 <개정 2017.12.4., 2024.12.11.>
- 1. 기업어음(CP)발행
- 2. 당좌대월, 일반대출 등 금융기관에서의 차입
- ③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른 차입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 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<개정 2017.12.4., 2024.12.11.>

제3장 자금위험관리위원회

- 제16조(설치 및 구성) ① 자금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금운용상 내제된 위험을 사전에 점검해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금위험관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.)를 설치·우용한다. <개정 2011.6.14>
-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이상 10명 이내의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. 이 경우 외부 위원은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간사 1명을 둔다. <신설 2011.6.14., 개정 2019.12.18.>
- ③ 위원장은 자금운용 주관 본부의 장으로 하고, 위원 및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11.6.14>
- ④ 외부위원은 제17조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관련분야 전문가단(Pool)을 구성하여 선정하고, 내부위원은 제17조 제2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선정한다.
-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선정에서 배제한다. <신설 2011.6.14>
- 1. 관련 기관으로부터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
- 2. 위촉 시 경력, 학력 또는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4호에 따를 부패행위 전력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
- ⑥ 위원의 위촉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 2회 이하로 제한한다. <개정 2024.12.11.>
- 제17조(위위자격) 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자로 한다.
- 1.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재무분야의 부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- 2. 재무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당해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자
- 3. 공공기관 또는 상장법인에서 재무담당 부서장급 이상의 경력소유자
- 4.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
- 5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1호부터 4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② 내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- 1. 해당 전문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4급 이상 직원
- 2. 그 밖에 관련 분야 경력 등이 1호의 기준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- ③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·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. <신설 2024.12.00>
- 1.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각종 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
- 2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 · 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
- 3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

활용하는 행위

- 4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밤생합 경우
- 5.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
- 6.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ㆍ향응ㆍ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ㆍ알선하는 행위
- 7.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
- ④ 위원으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1호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12.11.> [본조신설 2011.6.14]
- 제18조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리·재결에서 제척된다.
- 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그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
- 2. 위원이 그 안건의 당사자와 「민법」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- 3.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용역, 자문,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
- 4. 해당 심의안건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 당사자가 되는 경우
- 5.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안건 대상 업체 등에 재직한 경우
- 6. 감독부처 소관 공무원
- 7. 위원은 해당기관 또는 심의대상 기관에서 발주하는 직무관련 용역·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 참여
- 8. 한 명이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위촉되는 경우
- 9. 기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
-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리·재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리·재결을 회피할 수 있다
- ④ 안건의 심리·재결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위원 아닌 간사 또는 직원에게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[본조신설 2011.6.14]
- 제19조(임기) ① 외부위원은 3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.
- ② 임기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된다.
- 1.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- 2. 담당 심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
- 3.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.

4. 제18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<시설 20191218 >

[본조신설 2011.6.14.]

- 제20조(대리참석) ① 위원회 구성위원 중 외부위원의 대리참석은 허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내부위원이 위원회 참석이 불가한 경우 해당부서의 4급 이상을 대리위원으로 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별지 제2호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. [본조신설 2011.6.14]
- 제2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 <개정2011.6.14>
- 1. 연간 자금운용계획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
- 2. 자금 배분 및 변경에 관한 사항
- 3. 자금운용 평가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
- 4. 재무위험 측정 및 허용위험 설정에 관한 사항
- 5. 재무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
- 6.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22조(운영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무를 관장한다. <개정2011.6.14>
- ② 위원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<개정2011.6.14., 2024.12.11.>
- ③ 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이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·의결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2.11.>
-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<개정2011.6.14., 2024.12.11.>
- ⑤ 간사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에게 안건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신설 2019.12.18.> <개정 2024.12.11.>
- 제23조(수당의 지급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내부 임직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24조(위원회 운영 공개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그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개최일 5일 전까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문서 또는 전자적 방법(홈페이지 게시, 문자메세지 전송, 이메일 통지)에 따라 알려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현황 및 활동내역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6.14]

제25조(의견청취) 위원회는 심의 및 의결에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, 당사자 기타 이해관 계인 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11.6.14]

제26조(회의록 작성 및 보관)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서면 결의서를 작성 후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전원이 의무적으로 열람하고 서명날인을 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6.14]

- 제27조(회의록 공개 및 통지)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14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. 다만,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비공개 한다.
 - ② 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필요시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주어야 한다.

[본조신설 2011.6.14]

제4장 위험관리 및 성과평가

- **제28조(위험관리 원칙)** ① 자금운용담당자는 투자위험 및 자금배분의 적정성 분석 등 위험관리를 통하여 운용위험을 최소화하여야 한다.
- ② 자금운용의 수익은 위험에 대한 적절한 허용관리를 통하여 창출되므로 위험을 정확하게 인식, 측정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**제29조(위험관리의 방법)** ① 자금운용담당자는 위험관리를 위하여 설정된 각종 한도 및 기타 사항에 대해 준수여부를 상시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.
- ② 점검결과 위험수준에 노출되었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2011.6.14>
- 제30조(성과평가) ① 자금운용담당자는 수익률 제고 및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경영지원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
- 제31조(위험관리 세부사항 등) 자금운용담당자는 위험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리스크관리지침을 정하여 관리 및 통제할 수 있다.

제5장 감사 및 공시

제32조(감사) ① 자금우용에 대한 감사는 회계법인에 의한 정기 결산감사시 함께 수행함

수 있다.

② 감사시 거래기관에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고, 자료요청을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.

제33조(공시) 자금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 시할 수 있다.

1. 연간공시 : 연간자금운용현황, 대차대조표, 손익계산서

2. 수시공시 : 기타자금운용의 주요 결정사항과 관련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 하

부 칙 <규정 제849호, 2008.11.28.>

이 세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직제시행세칙) <규정 제872호, 2009.08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세칙은 200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제규정 및 지침의 개정) ①~③ 생략

④ 자금운용업무에 관한 세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6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중 "경영기획처장"을 "경영기획실장"으로 한다. ⑤~⑫ 생략

부 **칙** <규정 제928호, 2011.06.14.>

이 세칙은 2011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제규정관리규정) <규정 제1160호, 2017.12.04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개정) 법률 제14939호(2017.10.24.) 및 정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 시행중인 공단의 제 규정 중 "교통안전공단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"으로 하고, "교통안전공단법"을 "한국교통안전공단법"으로 한다.

부 **칙** <규정 제1485호, 2024.12.11.>

이 세칙은 2024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 (제17조 제3항 관련) <신설 2011.6.14.> <개정 2017.12.4.><개정 2019.12.18.>

청 렴 서 약 서

직위 : 자금위험관리위원회 위원(장) 성명 : ○ ○ ○

상기 본인은 자금위험관리위원회 위원(장)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,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(장)해임·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.

- 1. 위원회 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 준수
- 2. 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등 각종 계약을 체 결하여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3.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동산·주식 등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 금지
- 4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허가되지 않은 방법으로 사적인 연구 등에 활용하는 행위 금지
- 5. 위원회 직무수행 과정에서 본인 및 가족, 본인이 속한 단체 및 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의가 발생할 경우 회피
- 6.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사업체를 경영하거나 해당 사업체 취업행위 금지
- 7. 위원회 업무와 관련 부당한 편의·향응·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청탁·알선 행위 금지
- 8. 기타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거나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금지

년 월 일 ○ ○ ○ (서명) [별지 제2호 서식] (제20조제2항 관련) <신설 2011.6.14>

위 임 장

본인은 자금위험관리위원회 위원으로서 금번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 차 위원회(20 . .)에 출석 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합니다.

년 월 일

자금위험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

[별지 제3호 서식] (제26조 관련) <신설 2011.6.14>

제 차 자금위험관리위원회 회의록

- 1. 회 의 명
- 2. 일 시
- 3. 장 소
- 4. 참 석 인 원
- 5. 심 의 사 항
- 6. 주요토의내용

7. 참석자 서명

구 분	성	명	서	명
위원장				
위 원				
위 원				
위 원				
위 원				

[별지 제4호서식] (제26조 관련) <신설 2011.6.14>

서 면 결 의 서

안 건:

상기 안전에 대하여 자금운용업무에 관한 세칙 제22조 제2항에 의거 위원 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결의코자 하니 검토 후 동의 여부를 표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구 분	성 명	의 견 (찬·반)	서 명
위원장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
위 원			